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11.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제명이 「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로 되어 있으나 문화예술회관의 설치근거는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 별도 규정되어 있고, 본 조례에는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명을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 현행 조례상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사용료 수입으로는 공연에 소요되는 각종 설비와 장비 가동에 필요한 재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시설사용 기준을 시간단위에서 공연회수 단위로 변경하고, 시설사용료를 소요되는 재료비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며, 문화예술회관의 전반적인 운영 권한을 "군수"에서 "관장"으로 변경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서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로 변경하여 조례 내용과 부합 되게 함(안 제1조)

나. 조례의 용어를 현행 기준에 맞게 변경함(안 제3조)

다. 문화예술회관이 성주군 산하의 사업소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사용허가·사용료 징수 및 시설관리 등의 전반적인 운영권한을 관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6조 내지 제10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마. 효율적 예술회관 운영을 위하여 공연(행사 포함) 종류별로 시설 사용 일수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무리한 사용허가 신청을 억제(안 제7조제2항)

(1) 영화 : 10일 이내
(2) 연극 및 창극 : 5일 이내
(3)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
(4) 국악 및 음악회 : 3일 이내
(5)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공연 : 5일 이내

(6) 전시회 : 10일 이내
(7) 일반행사 : 2일 이내
(8) 기타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3일 이내

바. 예술회관의 사용기준을 시간단위에서 공연회수 단위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에 오전·오후·야간 등으로 구분한 사용시간을 폐지하고 당일 사용가능 시간만을 규정함(안 제9조)

- 사용시간 : 예술회관 - 9시부터 22시까지
전 시 실 - 10시부터 20시까지

사. 예술회관의 사용료 기준을 시간단위에서 공연회수 단위로 변경하고, 공연의 종류별로 사용료를 구분하여 전체적인 사용료 수준을 상향조정함(안 제10조)

(1) 기본시설 사용료
· 예술공연 - 1회당 400,000원
· 일반행사 - 1회당 450,000원
· 영 화 - 1회당 250,000원
· 흥행성공연(오락적인 쇼, 대중가수콘서트 등) - 1회당 1,000,000원

(2) 영화 및 흥행성 공연의 경우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영화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기본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기본 사용료

(3) 공연연습, 무대설치, 행사준비 등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

(4)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아. 종전의 예술회관 사용료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여성교육 및 사회교육 등에 대한 수강료를 별도 분리하여 규정함(안 제11조의 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3)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4) 참고자료 :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증진을 위한"을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으로 하고, "설치 및 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동조 제1호중 "대강당"을 "대공연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운영)" 을 "(위탁운영)"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군수는 제5조 에서 정한 시설을 사용"을 "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예술회관을 운영"으로 하며, 동항중 "운영하게"를 "운영"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중 "군수" 를 "관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군수가" 를 "관장이"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군수는"을 "관장은" 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단서중 "군수가"를 "관장이"로 하며, 동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화 : 10일 이내
2. 연극 및 창극 : 5일 이내
3.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
4. 국악 및 음악회 : 3일 이내
5.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공연 : 5일 이내
6. 전시회 : 10일 이내
7. 일반행사 : 2일 이내
8. 기타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3일 이내.

제8조중 "군수는"을 "관장은"으로 하고, 동조 제5호중 "군수가"를 "관장이"로 한다

제9조중 "08:00부터 22:00"를 "9시부터 22시"로 하고, "10:00부터 20:00"를 "10시부터 20시"로 하며, 동조 단서중 "군수가"를 "관장이"로 하고, 동조의 "표"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항중 "별표"를 "별표 1"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제10조(사용료)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최초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사용일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영화 및 흥행성(오락적인 쇼, 대중가수 콘서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 있는 유료공연물의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영화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최초사용일 7일전까지 관람권 검인금액의 100분의 10(영화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하게 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하여 사용 종료 후 정산할 수 있다

④공연연습·무대설치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 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⑤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기준사용료 전액을 징수하며,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가산한다.

⑥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 2(수강료) 예술회관에서 시행하는 여성교육 및 사회교육 등을 수강 하고

자`하는 자는 별표 2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중 "군수"를 "관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군수는"을 "관장은"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군수가" 를 "관장이"로 한다.

제15조 단서중 "군수" 를 "관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이하 "사용자"라 한다)"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군수"를 "관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군수와" 를 "관장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군수가"를 "관장이"로 한다.

제17조중 "군수는" 을 "관장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군수가"를 "관장이"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군수는" 을 "관장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사용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재명 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조례재명 변경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 전승을 도모하고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 제공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성주군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 **운영** ---------- .	조례재명 변경으로인한 자구 수정
제3조(용어의 정의) 예술회관 사용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술회관"이라 함은 **대강당**, 야외무대, 문화여성복지센터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내지 4. (생략)	**제3조(정의)** ---------- . 1. ---------- **대공연장** ---------- . 2. 내지 4. (현행과 같음)	용어를 현행 기준에 맞게 고치고 대강당 명칭을 변경
제4조(운영) **①군수는 제5조에서 정한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위탁운영)** **①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예술회관을 운영** ---------- **운영** ---------- . **<삭 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관장이 행사 하도록 하고, 일부 조항 개정(삭제)에 따른 자구 수정
제5조(시설사용) 예술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전시실, 소강당, 야외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 **2. 부대설비 : 피아노(공연용),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영사시설 및 기타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삭 제>**	불필요한 규정 삭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6조(사용허가) ①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③예술회관 사용허가의 범위는 제2조 각호의 경우와 **군수가** 내용상 예술회관에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로 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 **관장**---------- ---------- -------. ② (현행과 같음) ③---------- -------**관장이** ---------- ----------.	사용허가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이 행사 하도록 함.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될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지 5. (생 략)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①**관장은** --------- ---------- ----------. 1. 내지 5. (현행과 같음)	사용허가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이 행사 하도록 함.
②제6조에 의한 사용허가는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영화 : 15일 이내** **2. 연극 및 창극 : 7일 이내** 3. 내지 5. (생략) **6. 전시회 : 15일 이내** **〈신 설〉**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5일 이내**	②---------- ----------. ----. **관장이** ---------- ----------. **1. 영화 : 10일 이내** **2. 연극 및 창극 : 5일 이내** 3. 내지 5. (현행과 같음) **6. 전시회 : 10일 이내** **7. 일반행사 : 2일 이내** **8.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3일 이내**	공연의 종류에 따라 사용일수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회관운영에 효율을 기함.
제8조(허가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내지 4. (생 략) 5. 기타 공익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8조(허가취소 등) 관장은**---------- ---------- ----------. 1. 내지 4. (현행과 같음) 5. ----------**관장이**------ ----------	사용허가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이 행사 하도록 함.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h>개정이유</th></tr>
<tr><td>제9조(사용시간) 예술회관의 공연장 등 사용시간은 <u>08:00부터 22:00</u>까지로 하며, 전시실 사용시간은 <u>10:00부터 20:00</u>까지로 한다. 다만, <u>군수가</u>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table>
<tr><th>1일</th><th>오 전</th><th>오후</th><th>야간</th></tr>
<tr><td>08:00-
22:00</td><td>08:00-
12:00</td><td>13:00-
17:00</td><td>18:00-
22:00</td></tr>
</table>
</td><td>제9조(사용시간) ———————
——— <u>9시부터 22시</u> ———
——————— <u>10시부터 20시</u>———
———, <u>관장이</u>———
———.

<u>〈표 삭제〉</u></td><td>사용기준을 공연회수로 변경함에 따라 전체적인 사용가능 시간만을 규정하고 시간구분을 삭제함.</td></tr>
<tr><td><u>제10조(사용료 등)</u> <u>①예술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와 같다</u>
<u>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허가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통보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u>
<u>③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 제1항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u>
<u>④사용자가 제9조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u></td><td><u>제10조(사용료)</u> <u>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최초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사용일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u>
<u>②영화 및 흥행성(오락적인 쇼, 대중가수 콘서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이 있는 유료공연물의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10(영화의 경우에는 100분의2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u>
<u>③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최초사용일 7일전까지 관람권 검인금액의 100분의 10(영화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하게 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하여 사용종료 후 정산할 수 있다.</u>
<u>④공연연습 · 무대설치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u>
<u>⑤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기준사용료 전액을 징수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가산한다.</u>
<u>⑥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u></td><td>·사용료 산정기준을 공연회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사용료를 상향조정하고,
·현행 사용료 특례 및 감면 사항 등을 개정 사용료 규정으로 통합하고,
·사용료 징수 등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함</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1조(사용료 특례 및 감면) ①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 입장의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제10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영화상영에 따른 사용료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③공연연습, 무대설치 및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④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사용료 규정에 포함
〈신 설〉	**제11조의 2(수강료)** 예술회관에서 시행하는 여성교육 및 사회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여성교육 등에 대한 수강료 규정 신설함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군수는** 예술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 --- ---**관장**--- ---. ②**관장은** --- ---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장이**--- --- --- --- ---.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이 행사 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5조(권리의 양도금지) 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권리의 양도금지)** —————— —————— ——————. ——. **관장** —— ——————————.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이 행사 하도록 함.
제16조(관람료 등) ①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필요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④제3항의 예매수수료는 관람권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판매되지 아니한 관람권과 입장시 절취한 관람권은 입장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폐기한다. ⑥ 내지 ⑧ (생 략)	**제16조(관람료 등)** ①—————— ——————**(삭 제)** —— ——————————. ②—————————— —————————— ——————**관장**——————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장과** —— ——————————. ⑤—————————— —————————— —————— **관장이** —————— ——————————. ⑥ 내지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경우에는 **군수는** 예술회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내지 4. (생 략)	**제17조(입장의 제한)** —————— —————————— **관장은** —— ——————————————. 1. 내지 4. (현행과 같음)	
제18조(홍보물 게첨) ①사용자가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예술회관에 게첨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8조(홍보물 게첨)** ①—————— —————————— ———— **관장이**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강사의 초빙) ①**군수는** 여성 및 사회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9조(강사의 초빙)** ①**관장은**—————— —————————— —————————— ——————————. ② (현행과 같음)	